

노 90. 3. 30

농민, 45년만에 전국단일조직 되찾는다

전농의 '강령', '규약' 초안 확정 의미

“본회는 농민의 전국적·지역적 협력과 단결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적 제권리를 실현하며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 조국통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오는 4월24일 공식출범을 앞둔 '전국농민회총연합회'가 규약 초안의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조직의 목적이다.

전농준비위(준비위원장 권중

농민적 토지소유 위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대·54)는 지난 제4차 추진위원회 회의(3월21일~22일, 대전의 가농회관에서 '강령' 및 '규약' 초안을 확정하고, 이를 오는 4월 10일의 전군대표자회의 및 24일의 창립대의원대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강령' 및 '규약'의 내용은 이미 군단위에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몇몇 민감한 조항을 빼놓고는 대부분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강령은 이밖에 ▲농민적 농지 소유를 위한 토지개혁의 실시 ▲

농산물 가격의 100% 실현 ▲외국 농산물수입의 금지 ▲민족민주운동 세력과의 연대 등 산적한 농촌문제의 해결의지를 담은 19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 농민이 아닌 사람들에 의한 농지소유에 따른 농토점착 및 소작지 증대, 외국농산물 수입에

유정책 ▲국가책임하의 자연재해 방지와 복구 ▲국가부담에 의한 생활환경개선 ▲여성농민들의 과도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강령'에서는 ▲농민들의 정치적 진출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관행의 청산 및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등 농촌사회의 실

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7개 장 38개 조항으로 된 '규약'의 초안은 전농의 조직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우선 전농가맹 군농민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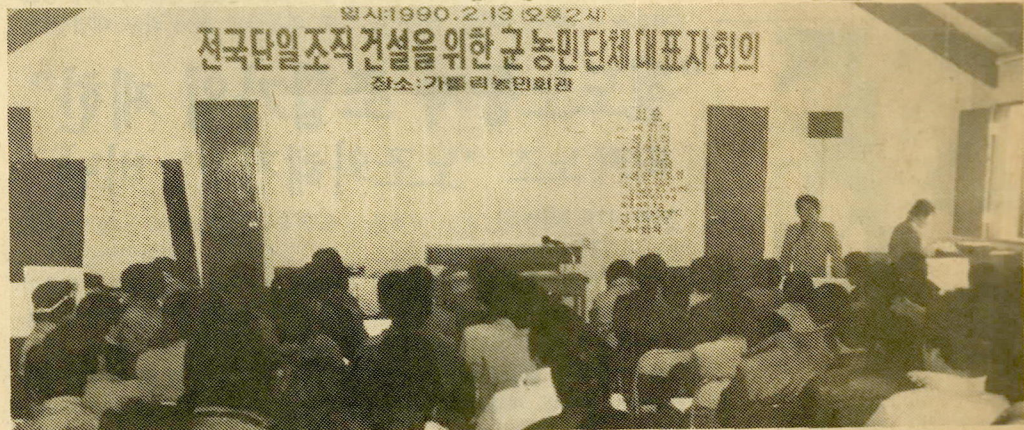
농산물가격 100% 실현 외국 축산물 수입저지

개 이상의 면지회(면농민회)를 가지고 있거나 면조직이 없더라도

의 군대표회의에서 다시 논의에 부치기로 했다.

'규약'의 제3장 조직체계에 따르면 전농의 최고의결기관은 대의원대회이다. 대의원은 군농민회에서 회원 50명당 1인씩 선임하되, 1명일 경우는 군회장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된다. 단 회원이 1천명 이상인 군농민회는 1천명까지는 50명당 1명씩을 선임하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백명당 1인씩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계산할때 전국대의원의



‘전국농민회총연합회’ 건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지난 2월의 군농민 대표자 회의

농민단결과 연대투쟁의 현실인식 반영 계급·민족문제도 거론, 변혁운동 지향

질적 민주화에 필요한 조치로부터 ▲독점자본의 농민수탈저지 및 궁극적인 해체 ▲외세의 간섭·억압·침탈행위의 불용 ▲남북간의 긴장·대결의 종식과 조국통일 성취 등 계급·민족문제까지를 폭넓게 거론함으로써 변혁운동체로서

여러 면에 산재한 5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군조직에 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내용은 '1·3 전농련·전농협 연석회의' 및 '2·13군대표자회의'의 합의사항이기는 하나, 일부 군농민회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어 4월10일

총수는 전국적으로 약 4백여명 안팎일 것으로 전농준비위는 추산하고 있다.

또 상임의결기구로서 각군회장·도의장·전국임원·작목별위원장·사무처장·정책실장 등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당연직

의 1/10이내 범위)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를 두고, 상설집행의결기구로서 중앙집행위원회(총연맹의 장단, 중앙위의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특별위원장)으로 구성)를 둔다. 여기서 '전국임원'이란 총연맹의장단, 대의원대회의장단, 감사, 정책실장 및 사무처장을 의미하며 임기는 1년이다(제12조)

가맹 군농민회 회원의 권리규정(제33조)에서는 회원들이 '조직내외에서 사상·정치·종교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회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중앙위원급 이상의 임원이나 실무책임자는 연맹의 조직적 결의를 거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제4차 추진위원회에서 전농련측이 제안한 전농의 전민련 가입문제는 논란끝에 창립대회에서 '특별안건'으로 제출토록 표결 처리됐다. '특별안건'은 일반안건(1/2출석에 1/2찬성)과는 달리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성립된다(제32조 2항).

'전농'의 전민련 가입문제는 농민운동권의 미묘한 사안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전농'준비위가 전노협·전민련·전교조 등 6개단체와 함께 꾸리고 있는 '민중

전민련 가입문제는 창립대회까지 유보

연대회의'가 최근 전민련의 회의 참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농'준비위 내부에서

전민련 강화론의 입장에 선 전농련 그룹과 그렇지 않은 여타 그룹과의 사상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농'의 창립일정이 외부의 방

해나 내부의 이견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4월24일은 7백만 농민이 해방직후의 「전국농민조합총연맹」(45년 12월8일 결성) 이래 45년만에 '강령'과 '규약'을 갖춘 명실상부한 전국단일조직을 되찾는 날이 될 것 같다. (이복주 기자)

방 전면화에 따른 생산비 이하로
의 농산물가격 폭락, 나아가 농업
기반의 파괴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은 전 농민적 단결
과 광범위한 민중연대에 의한 투
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현실인
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강령에서는 또 ▲국가서비스
방식의 전면적 의료보장제도 ▲고
등학교까지의 무상의무교육제 단
계를 통한 전면적 무상교육의 실
현 ▲빈소농에 우선한 농가부채의
전면해결 ▲어용화한 농수축협
농어민대표에 의한 자주적 운영·
관리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농촌의 의료·교육문제 및 농가부
채 급증·생산자협동조합의 민주
화 등 당면문제의 해결처방을 제
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
농산물생산·판매의 계획화 ▲농
업관련산업의 농민주도 ▲농업발
전을 뒷받침하는 재정·조세·금

100 X 40

80 X 80

80 X 65

80 X 50

80 X 40

80 X 32

80 X 25

80 X 20

80 X 15

65 X 65

65 X 50

65 X 40

65 X 32

65 X 25

65 X 20

65 X 15

7

7

0

자

자재부

자